

유권자 안내서

1989년부터 뉴욕시 선거에 대한 공정한 정보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하세요
뉴욕시의 미래를
바꾸는 길입니다

사전투표: 10월 26~11월 3일
본선거: 11월 5일

사전투표
4페이지

투표방법
8페이지

매칭 지원금 프로그램
10페이지

후보 소개
12페이지

주민투표안
15페이지

질문과 응답
30페이지

11월 5일 여기에서 투표하세요

자신의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하려면
voting.nyc를 방문하세요



시의회 선거구 (CD):
뉴욕주 하원 선거구 (AD):
지역 선거구 (ED):
지정 투표소:

영어판 표지를 확인하세요>

New York City
Campaign Finance Board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2019년 뉴욕시 유권자 안내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뉴욕시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안내서는 뉴욕시 공익옹호관 후보를 포함해 올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 관련 정보, 투표방법 그리고 이외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귀하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모든 선거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 voting.nyc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 ◆ 이제 선거일 이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 이번 선거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민투표가 시행됩니다(15페이지). 각 투표용지의 양면을 다 확인해 주민투표와 모든 선거에 대한 선택사항을 기표하세요.

다가오는 선거 일정

- | | |
|---------|---|
| 10월 11일 | ◆ 이번 본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우편접수 마감일 (뉴욕시 선관위에 10월 16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 | ◆ 이번 본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방문접수 마감일 |
| 10월 26일 | ◆ 사전투표 첫날 |
| 10월 29일 | ◆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 우편접수 마감일 (이날 소인까지 유효)
*선거일(11월 5일)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11월 3일 | ◆ 사전투표 마지막 날 |
| 11월 4일 | ◆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 방문접수 마감일
◆ 부재자 투표용지 우편 접수 마감일 (늦어도 이날 소인이 찍혀야 하며 선관위에 11월 12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 11월 5일 | ◆ 부재자 투표용지 방문접수 마감일
◆ 본선거일 |

2 |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하세요

선관위에 개인정보를 갱신하세요

선거재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등록 유권자가 있는 모든 뉴욕시 가정에 유권자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이 유권자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았지만, 자신이 수신인이 아니거나, 수신인이 이사 또는 사망했다면 선관위에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32페이지에 있는 "선관위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현명한 유권자는 환경도 보호합니다!

웹페이지 nycvotes.nycfb.info에서 등록하면 유권자 안내서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위치 확인하기



이 유권자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안내서 표지를 확인하세요. 11월 5일 어느 투표소로 가야 하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하면 선거일에 받게 될 투표용지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투표해야 하나요?"("Where Do I Vote?")를 클릭해 투표소 위치도 확인하세요.

아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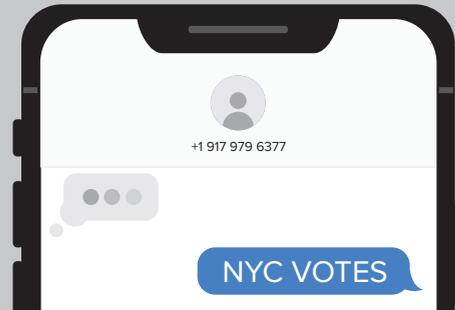


선거관리위원회(866-VOTE-NYC; 866-868-3692)로 전화해 사전투표소 위치를 문의하세요.

스마트한 유권자는 투표 정보도 스마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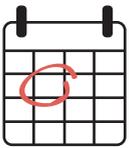
다시는 선거 관련 마감일을 놓치지 마세요. 웹사이트 nycvotes.nycfb.info에서 등록하거나 NYC VOTES라고 문자를 입력해 +1-917-979-6377로 전송하면 이메일과 문자로 알림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개혁에 관한 최신 뉴스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웹사이트 nycvotes.nycfb.info/nycvotesblog를 방문하세요.



투표 계획 짜기

오늘



시간 정하기

스케줄을 확인하고 몇 시쯤 투표할지 생각해 본 다음 정한 시간을 일정에 추가하세요. 10월 26일부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4페이지 참조)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투표 참여를 권장하세요.



투표소 위치 확인하기

투표소 위치를 미리 숙지해 두세요.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라면 11월 5일 본선거 지정 투표소와 다른 곳에서 투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후보자 프로필과 주민투표안 내용 숙지하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 읽어보고 voting.nyc에서 후보 동영상도 시청하세요.



모든 정보를 꼼꼼히 따진 다음 어떻게 투표할지 미리 결정하세요

투표하는 날



투표소 위치 재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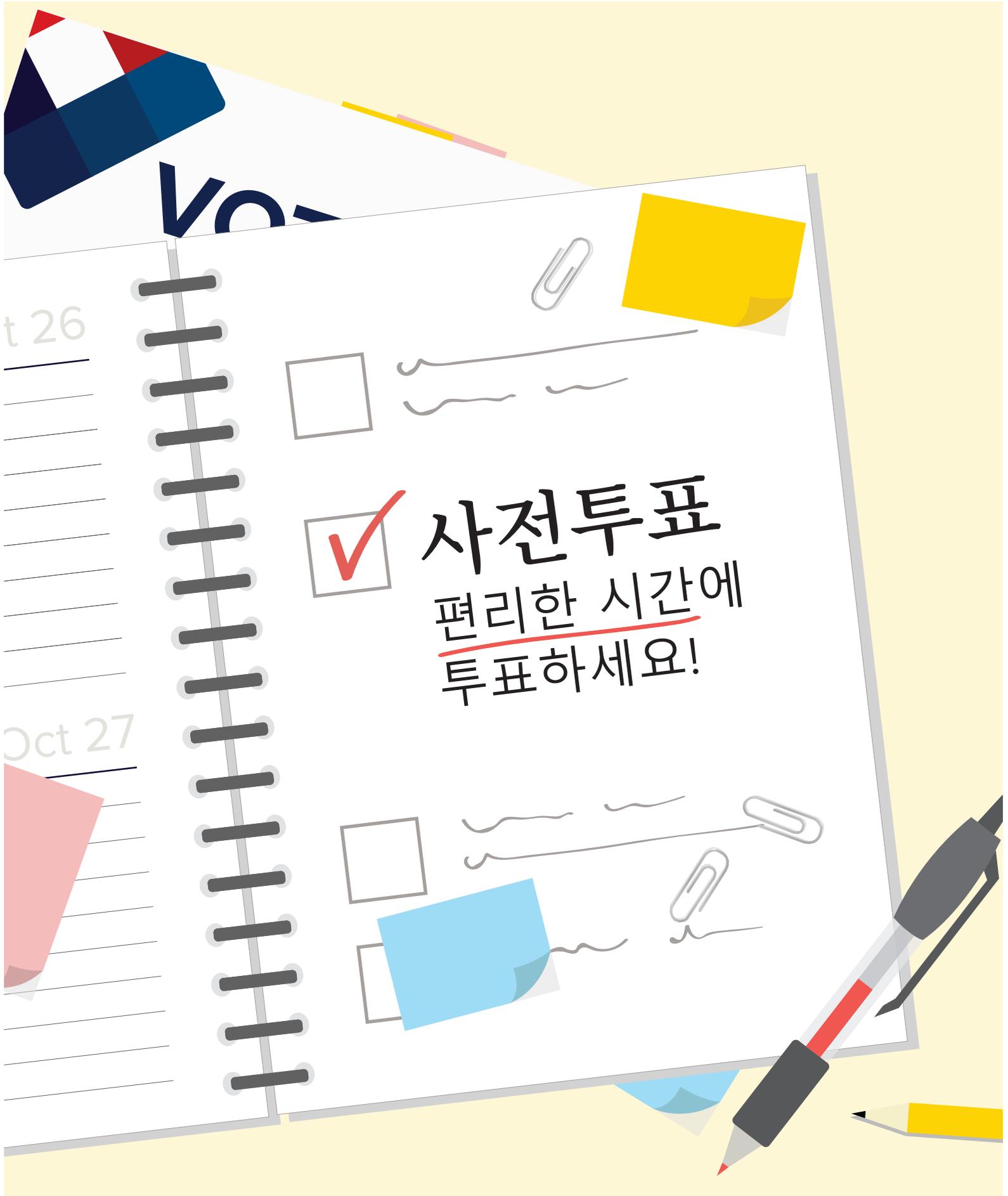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해 다시 한번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세요.

이 유권자 안내서를 지참하세요



가서 투표하세요!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서 투표하세요!

2019년 본선거 11월 5일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9시 | 3



4 |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하세요

사전투표

웹사이트
voting.nyc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뉴욕시 유권자들은 올해 가을부터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부터 11월 3일 일요일까지 여러분이 거주하는 보로의 지정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세요.

아니면 본선거일인 **11월 5일** 원래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또 그럴 수 없을 시에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일정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10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7시 ~ 오후 8시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11월 1일	금요일	오전 7시 ~ 오후 8시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11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사전투표소

선관위가 사전투표소를 배정할 것입니다. 선거 당일에 가야 하는 투표소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웹사이트 **voting.nyc**에 방문하면 귀하의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투표하러 가기 바로 전에 꼭 재확인하세요.



2019년 본선거 11월 5일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9시 | 5

유권자 권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이번 본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 등록 유권자인 경우 (자신의 유권자 등록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voting.nyc를 참조하세요)
 - ◆ 최소한 18세이고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 ◆ 투표 마감 시간 전에 올바른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경우 (투표소 위치와 운영 시간은 voting.nyc에서 확인하세요)
- *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해 귀하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세요. 배정된 투표소에 처음 방문한 것이거나, 마지막으로 투표한 이후에 이사했거나, 등록 정당을 바꿨다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선거관리요원이나 원하는 사람(단 고용주나 노조 대표는 제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선관위 통역사가 지정 투표소에서 유권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통역사가 제공되는 투표소와 통역이 지원되는 언어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866-VOTE-NYC(866-868-3692)**로 연락해주시요.
- ◆ 투표소에 갈 때 이 유권자 안내서를 포함하여 귀하가 원하는 자료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단 투표를 마치면 모든 자료를 다시 가져가 주세요)
- ◆ 투표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투표소 유권자 명부에 귀하의 이름이 없다면 선서투표용지 (affidavit ballot)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뉴욕주는 유권자의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해 줍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계획이라면 근무 시작이나 종료 시각에 맞춰 **최고 3시간까지 유급으로 투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선거일 2일 전에 사업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용주는 이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반드시 사업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늦어도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해당 공고문을 게시해 두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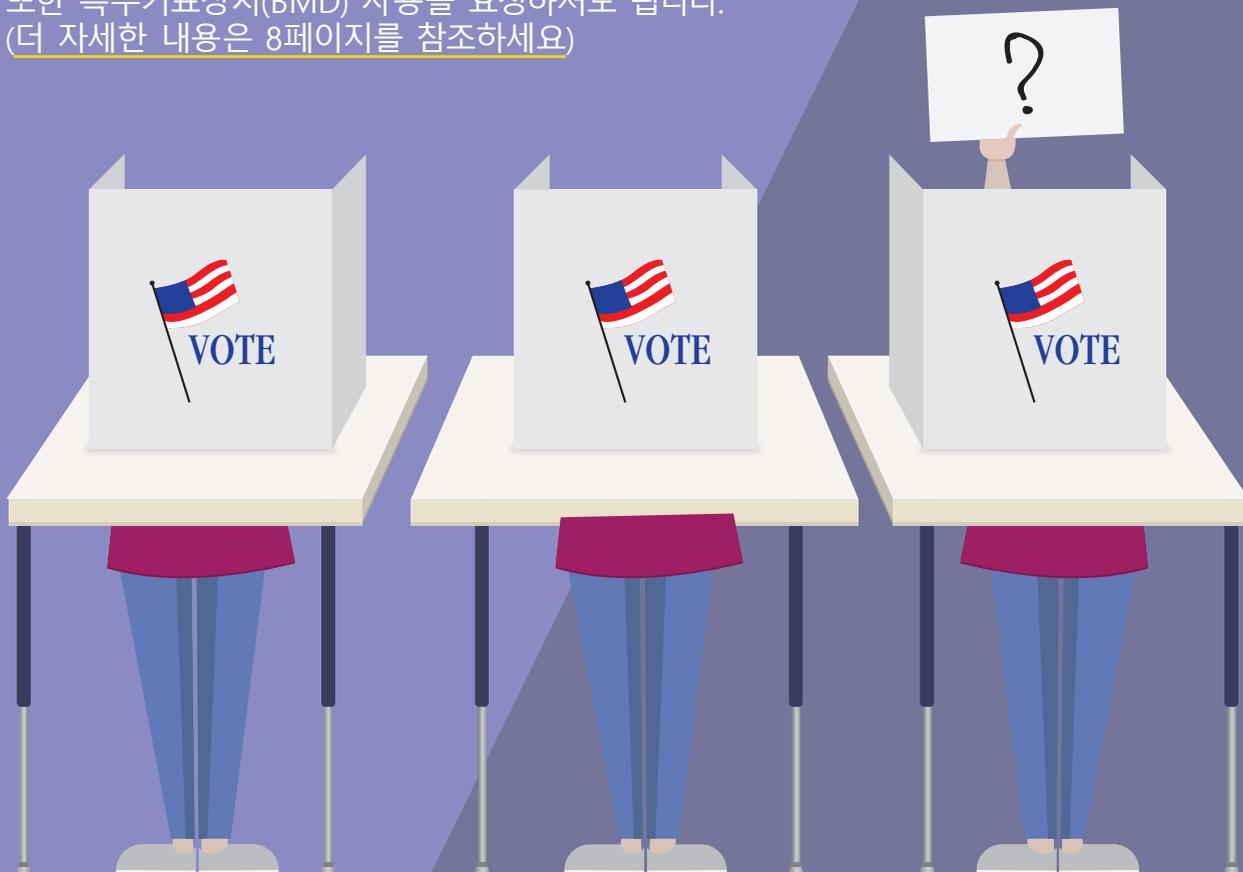
6 |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하세요



투표할 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투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나 노조 대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특수기표장치(BMD) 사용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를 참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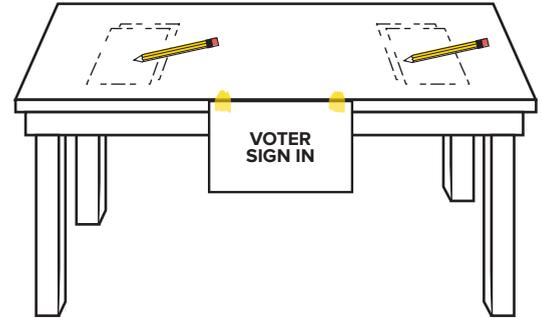
2019년 본선거 11월 5일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9시 | 7

투표방법

1 투표인 방명록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으세요

귀하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있는지 선거관리요원이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방명록에 서명하고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선거관리요원이 안내해 주는 기표소로 가시면 됩니다.

투표소에 갈 때 이 유권자 안내서나 선관위가 보내는 연례 통지서를 지참하세요. 귀하의 어셈블리 및 지역 선거구 (Assembly District/Election District) 번호가 표기되어 있어 등록 절차를 더욱더 쉽고 빠르게 마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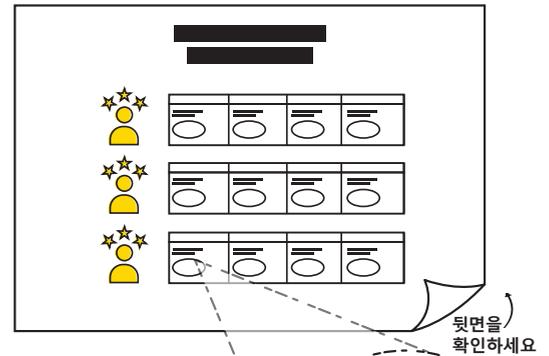
2 기표하세요

원하는 선택사항 옆에 있는 타원을 빈 공간 없이 색칠하세요.* 후보의 이름을 직접 쓰는 기명투표를 하기 원하면 해당 타원을 색칠한 다음 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각 장의 양면을 확인해 모든 선거와 주민투표안에 대한 선택사항을 기표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표기를 잘못했다면 선거관리요원에게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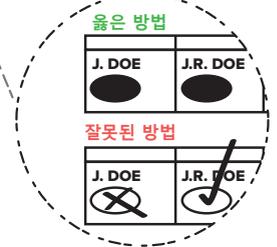
*특수기표장치 (BMD)

손으로 투표용지에 표기하는 대신 특수기표장치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선거관리요원에게 이야기하세요. 특수기표장치를 사용하면 투표용지 내용을 화면상으로 보거나 오디오 헤드폰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가지 방법으로 기표가 가능합니다:

1. 터치스 크린
2. 키패드 (점자)
3. 빨대식 (sip & puff) 기표장치
4. 발 조작식 (rocker paddle) 기표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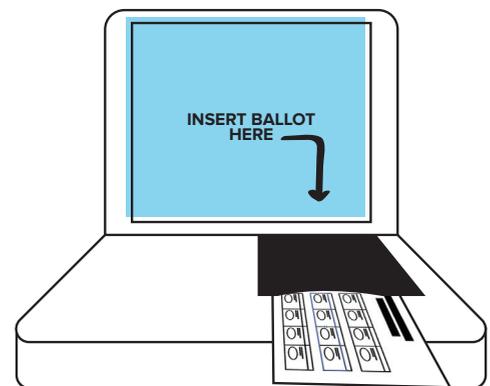


유의하세요: 타원에 "x" 나 "√" 또는 동그라미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일제히 다른 표시를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투표용지를 접지 마세요.



3 투표용지를 스캔하세요

기표를 다 마친 다음에는 투표용지를 스캐너가 있는 구역으로 가져가 스캐너에 삽입하세요. 투표 처리가 완료되면 스캐너에서 알림이 표시될 것입니다.



투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투표 참여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방 선거에서의 투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손으로 선출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사회, 학교, 직장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공익옹호관

공익옹호관은 시 정부에서 가장 다음으로 높은 직책입니다. 시 정부에서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 서비스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며, 뉴욕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안을 발의하거나 공동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요약

◆ 해당 후보가 뉴욕시 매칭 지원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 배지가 표시됩니다.

공익옹호관 (12페이지 참조)

공익옹호관은 시 정부에서 주민의 대변인 역할을 맡습니다.



Jumaane D. Williams
[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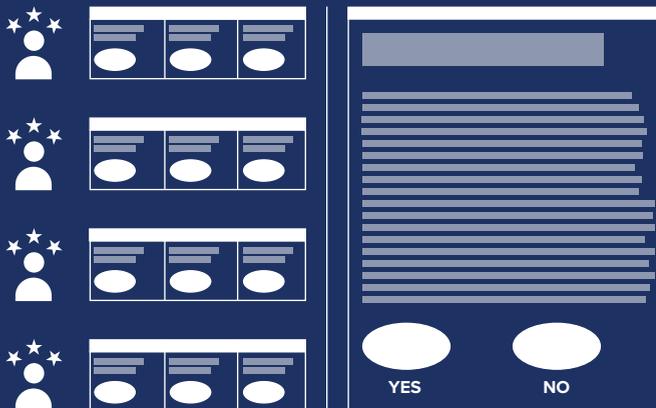


Joseph Borelli
[공화당, 보수당]



Devin Balkind
[자유주의당]

투표용지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꼭 모든 투표용지의 양면을 다 확인해 주민투표와 모든 선거에 대한 선택사항을 기표했는지 확인하세요!

뉴욕시 헌장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안이 투표용지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답에 따라 예(YES) 또는 아니오(NO) 옆에 있는 타원을 완전히 색칠하세요.

뒷면을
확인하세요

2019년 본선거 11월 5일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9시 | 9

뉴욕시 매칭 지원금 프로그램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CFB)가 운영하는 매칭 지원금 프로그램은 미 전역에서도 가장 우수한 측에 속하는 선거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선거 자금 운영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우려 또한 해소하는 데 일조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보는 뉴욕 주민들로부터 오직 소액 후원금만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지출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신, 공공 매칭 지원금을 받아 경쟁력 있는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보는 소액 후원금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선거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또한 뉴욕시 정부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고액 기부자나 특별이익단체의 영향력이 일반 유권자의 목소리를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도와줍니다.

뉴욕시 매칭 지원금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요?

1

뉴욕시 주민들이 고액 기부자를 찾지 않고도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배경과 상관없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지역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뉴욕시 정부의 다양성을 증진합니다

3

특별이익단체의 정치자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해 후보가 자신이 대표하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도록 합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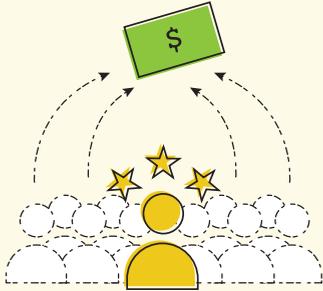
평범한 뉴욕시 주민들이 기부한 소액 후원금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증진합니다

5

선거자금 출처 및 지출 내역에 대한 공시와 감독을 통해 선거자금 관리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우려 또한 해소하는 데 일조합니다

10 |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하세요

뉴욕시 매칭 지원금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후보가 뉴욕시 주민들과 소통하며
소액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모금한 소액 후원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참여 조건을 충족한 후보는 자신이
모금한 후원금 \$1마다 공공 매칭
지원금을 \$8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자금 지출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익옹호관

Jumaane D. Williams

민주당



3대 주요 안건

- 1 심각한 뉴욕시 주거비용 문제 해결
- 2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
- 3 뉴욕시 형사사법 제도 전면 개혁

소속 정당: 민주당

현재 직업: 뉴욕시 공익옹호관

경력: 뉴욕시의원, 45 선거구

학력: 정치학 학사, 브루클린대학; 도시정책 및 행정학 석사, 브루클린대학

소속 단체: 어니스트 스키너 정치 협회; 토머스 제퍼슨 민주당 클럽

공직 경험: 뉴욕시의원, 45선거구; 커뮤니티보드 18 위원

“뉴욕시는 지역 운동가의 마음으로 시 정부에서 일반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공익옹호관이 필요합니다. 시의회에서, 또 그전에는 지역사회 운동가로서, 저는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싸우며 주민들을 옹호해 왔습니다. 저는 외부의 목소리와 내부 과정을 잘 혼합해 50개가 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뉴욕시 공익옹호관으로서 저는 계속해서 사회운동과 법률제정을 결합하여 뉴욕시를 전정한 진보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jumaane4NYC@gmail.com

🌐 www.jumaanewilliams.com

📘 NYCPAWilliams

🐦 JumaaneWilliams

📷 jumaane.williams

Joseph Borelli

공화당, 보수당



3대 주요 안건

- 1 드블라지오 시장의 정치적 안건 반대
- 2 드블라지오 시장의 정치적 안건 반대
- 3 드블라지오 시장의 정치적 안건 반대

소속 정당: 공화당

현재 직업: 뉴욕시의원, 화재 및 비상 대응 위원회 위원장, 뉴욕시립대 교수, 더 힐, 기고가

경력: 뉴욕주 하원의원, 뉴욕시의회 수석 보좌관, 바텐더

학력: 린지 연구원, 뉴욕시립대 주 및 지방 정부 인스티튜트; 석사, 뉴욕시립대 스태튼 아일랜드 칼리지; 학사, 메리스트 칼리지

소속 단체: 전미 공화당 시장 및 시의원 모임, 콜럼버스 기사단, 홀리 차일드 로마 가톨릭 교회

공직 경험: 뉴욕주 하원의원, 도시 위원회 간사, 뉴욕시 유권자 지원 및 자문 위원회

“인구가 85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이 안내서를 제작해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보내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을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예가 보여주듯이 시 정부는 예산을 감당하는 납세자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대변합니까?”

✉ info@josephborelli.com

🌐 JosephBorelli.com

📘 JoeBorelliNYC

🐦 JoeBorelliNYC

📷 joeborellinyc

🌐 joe-borelli-9088118

공익옹호관

Devin Balkind

자유주의당



3대 주요 안건

- 1 시 복지사업을 소개하는 안내 서비스 설립
- 2 시 정부 기관 디지털 혁신
- 3 MTA 및 뉴욕시 주택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혁

소속 정당: 자유주의당

현재 직업: 과학기술 전문가 및 비영리단체 간부

경력: 사업가, 디지털 제작자, 과학기술 교육자, 금융 전문가, 자동차 정비공

학력: 노스웨스턴대학 학사; 생물 지역주의 센터, 영속농업 디자인 자격증

소속 단체: 브루클린 자유주의당, 사하나 소프트웨어 재단

공직 경험: 시민 기술 전문가로서 뉴욕시 커뮤니티보드, 참여 예산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재난 구조와 같은 활동에 참여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토박이 뉴요커로서 지난 10년간 과학기술 관련 활동을 통해 정부, 비영리 단체, 그리고 신생 기업들이 돈을 절약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익옹호관으로서 저는 공정하고 공익 지향적인 과학기술을 토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시 정부를 재정을 아끼면서도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임기 첫해에 저는 다음 5가지 성과를 내겠습니다: 1)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2) 시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며; 3) 시민 참여 과정을 개선하고; 4) 뉴욕 대도시권 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5) 뉴욕시 주민들이 한눈에 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또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 웹 사이트를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11월 저와 함께 뉴욕시 정부를 업데이트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 devin@votedevin.com

🌐 www.votedevin.com

📘 votedevin

🐦 devinbalkind

📷 votedevin

🌐 devinbalkind



투표참여를 서약하세요

여러분께 한 표가 뉴욕시 미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표참여 서약 운동에 동참하세요:

nycvotes.nycfb.info/pledge2019

예

미확정

아니오



선출직 공무원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 손으로 선출하는 공직자들이 일자리, 임금, 교육, 주거 문제, 사법 제도와 같은 주요 현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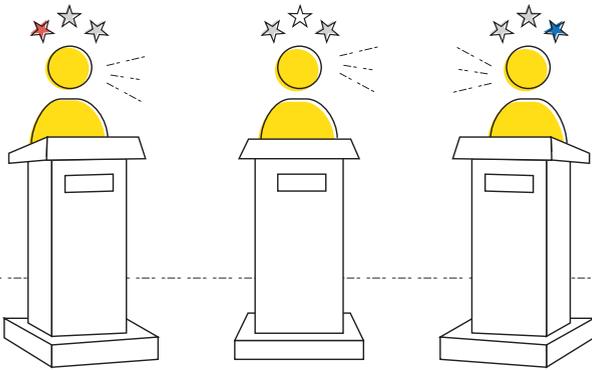
여러분의 투표가 왜 중요한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nycfb.info/nyc-votes/elected-officials를 방문하세요.

2019년 본선거 11월 5일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9시 | 13

후보 토론회

선거재정위원회는 미디어, 교육 기관 및 시민 단체와 공동으로 후보 토론회를 후원해 뉴욕시 주민들이 시 전체에 해당하는 선출직에 출마한 후보들로부터 주요 사안에 대한 견해를 직접 듣고 서로를 비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 전체에 해당하는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 중 선거 재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투표용지에 올라가 있으며, 최저 재정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는 토론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매칭 지원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후보도 이외의 참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토론회에 초대될 수 있습니다.



공익옹호관 1차 토론회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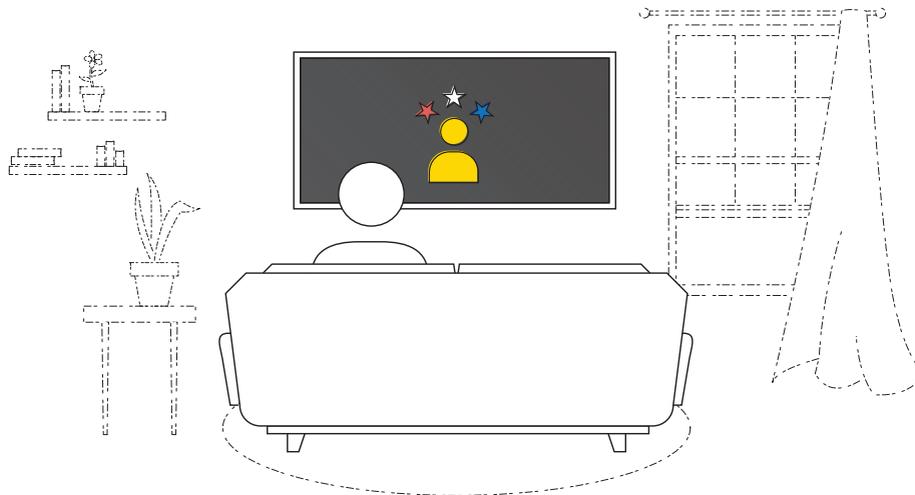
공익옹호관 2차 토론회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토론회 2회 모두 NY1 채널 웹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생중계됩니다. 또한 뉴욕시 소유 공영 채널인 NYC Life에서도 동시 중계되니 꼭 시청해 주십시오.

유권자 안내 동영상

시 전체에 해당하는 선출직에 출마한 후보들은 온라인판 유권자 안내서에 포함될 자기소개 동영상을 준비하도록 권유받습니다. 편한 시간에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해 "온라인판 유권자 안내서 보기"(Read the Voter Guide)를 클릭해 후보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뉴욕시 헌장 개정에 대한 주민투표안

시의회가 승인한 2019년 헌장개정위원회(CRC)는 뉴욕시 헌장에 대한 개정안을 권고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수의 공개 회의 및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웹사이트 charter2019.nyc를 방문해 회의 내용과 최종 보고서를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뉴욕시 정부가 나갈 방향을 결정할 차례입니다. 11월 선거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민투표안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세요.

본 안내서는 각 주민투표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투표용지에 기재될 주민투표안 공식 내용
- ◆ 헌개위가 제공한 공식 요약문을 바탕으로 선거재정위원회(CFB)가 쉽게 정리한 간략한 설명
- ◆ 통과 시 뉴욕시 주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

개인 및 단체가 제출한 찬성론과 반대론 전문과 각 개정안에 대한 공식 요약문을 읽어 보시려면 voting.nyc를 방문하세요.

주민투표안 목차

1번안: 선거법

- ◆ 선호투표제
- ◆ 보궐선거 시기
- ◆ 선거구 조정 기한

2번안: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

- ◆ 민원심사위원회 구조
- ◆ 민원심사위원회 예산 안정화
- ◆ 징계 권고사항의 불이행
- ◆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 ◆ 소환권 위축

3번안: 공직자윤리법

- ◆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 ◆ 이해충돌위원회 구조
- ◆ 이해충돌위원회 위원 정치활동 규제

3번안: 공직자윤리법 (앞에서 이어짐)

- ◆ 뉴욕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
- ◆ 뉴욕시 법무국장 임명 절차

4번안: 시 예산

- ◆ 수익안정기금("경기불황대비기금"으로도 칭함)
- ◆ 공익옹호관 및 보로장 예산 안정화
- ◆ 시 수익 추산
- ◆ 예산 수정 기한

5번안: 토지이용규제

- ◆ 토지이용검토절차(ULURP) 인증 전 통보 요구
- ◆ 커뮤니티보드 검토 기간 연장

2019년 본선거 11월 5일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9시 | 15

1번 주민투표안: 선거법

투표용지에 기재될 주민투표안 공식 내용

질문 #1: 선거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하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2021년 1월부터 시장, 공익 옹호관(Public Advocate), 감사원장, 자치구 장(Borough President) 및 시의원을 선출하는 예비 선거와 보궐 선거에서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을 선택하길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이기게 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는 탈락하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유권자의 표는 해당 유권자가 선택한 다음 순위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이 두 후보만 남을 때까지 반복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이기게 됩니다. 본 제안은 시장, 공익 옹호관 및 감사원장에 대한 별도의 2차 예비 선거를 없앨 것입니다.

뉴욕시 선출직의 공석이 생긴 시점과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 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을 연장합니다. 보궐 선거는 보통 공석 발생으로부터 80일 후에 실시하게 됩니다(현재는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 자치구 장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45일 후, 시장의 경우에는 60일 후에 실시됨).

시의회 후보들이 다음 예비 선거 투표에 나오기 위해 청원 서명을 받기 전에 시의회 지구 경계 설정이 완료되도록 절차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 절차는 10년마다 하게 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1번 주민투표안 요약문 및 부가 설명

선호투표제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뉴욕시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후보가 여러 명 출마해 당선 후보의 득표율이 매우 낮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은 후보가 선출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시장, 공익옹호관 및 감사원장 선거(시장 보궐선거 포함)의 경우, 최소 40%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득표율이 가장 높은 2명의 후보 간 결선투표가 추가로 실시됩니다. 결선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유권자는 투표할 때 최대 5명의 후보의 선호 순위를 기입하게 될 것입니다. 1순위 투표를 과반수(50%) 이상 받은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바로 당선됩니다. 하지만 1순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순위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최저 득표자를 1순위로 선정한 유권자의 표를 그들이 2순위로 정한 후보에게 분배하여 표를 재집계합니다. 이 과정을 두 명의 후보만 남을 때까지 반복하여, 그 둘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이 선거제도는 1순위 투표를 가장 많이 받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투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시킵니다. 선호투표제는 2021년을 시점으로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및 시의원을 선출하는 모든 예비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그 결과 별도로 결선투표를 치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궐선거 시기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또는 시의원이 임기 중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자리를 메울 후보를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시행됩니다. 현재 보궐선거는 대부분 공석이 발생한 지 45일 정도 이후에 실시됩니다. 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석 발생 60일 이후에 열립니다. 뉴욕주 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군 유권자에게 선거 45일 전 투표용지를 보내야 하므로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투표용지가 우송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마를 고려하는 예비 후보로서도 후보 명단에 오르기 위해 주민 서명을 얻고 선거운동을 펼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공석 발생 약 80일 이후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정확한 내용의 투표용지를 군 유권자에게 발송하고 출마를 고려하는 예비 후보들에게 출마 조건을 충족하고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와 소통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1번 주민투표안 요약문 및 부가 설명 (앞에서 이어짐)

선거구 조정 기한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2020년 미국 전체 인구를 집계하는 연방 인구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매 인구조사 이후 인구 변화를 고려해 선거구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수민족 지역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의회 선거구를 재조정합니다. 시장과 시의회가 임명하는 선거구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선거구조정안을 준비해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시의회가 이를 거부하면 위원회는 뉴욕시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구해 수정안을 준비합니다. 현재로서 차기 선거구 조정 절차는 2023년 3월까지 마쳐야 합니다. 본 기한은 11월에 실행되는 본선거까지 8개월의 여유를 줍니다. 또한 과거 예비선거가 9월에 실시되었을 때에는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 청원 서명을 모을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9월이 아니라 6월에 뉴욕시 및 뉴욕주 예비선거가 시행되기 때문에 2023년 3월 마감일은 선거 일정과 맞지 않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기한을 3개월 앞당겨 2022년 12월로 정할 것입니다. 이는 본선거보다는 11개월, 또 6월에 시행되는 예비선거보다는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와 유권자 모두에게 선거를 위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2번 주민투표안: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

투표용지에 기재될 주민투표안 공식 내용

질문 #2: 민원심사위원회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현장을 개정하게 됩니다.

공익 옹호관이 지명하는 1명,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 간사가 공동으로 지명하는 1명(위원장을 맡음)을 추가하여 현재 13명인 민원심사위원회(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CCRB) 위원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시장이 고려해서 지명하는 대신 시의회가 직접 CCRB 위원을 지명하게 됩니다.

시장이 재정적으로 예산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서면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CCRB의 연간 인건비는 경찰국의 정복 경찰관 수의 0.65%에 해당되는 CCRB 인원 수를 충당할 정도가 필요합니다.

경찰국장(Police Commissioner)이 CCRB 또는 경찰국 감찰 부국장 또는 부국장보(Police Department Deputy Commissioner for Trials or Assistant Deputy)가 권고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는 경우, 경찰국장은 CCRB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CCRB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 조사 또는 처리 과정에서 모든 중요한 진술의 진실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CCRB는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다수결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관련 조사에 관한 기록을 CCRB 집행이사에게 제출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2번 주민투표안 요약문 및 부가 설명

민원심사위원회 구조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경찰민원심사위원회(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CCRB)는 뉴욕시 경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 직권남용, 무례한 태도 및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CCRB가 조사를 거쳐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경찰국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의해 임명되는 경찰국장은 CCRB의 권고사항을 받아드리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CCRB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의회가 5명(뉴욕시 각 보로를 대표)을 선정하고 경찰국장이 3명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시장이 13명 위원 전원을 임명합니다. 시 헌장은 공석 발생 시 어느 기간 안에 빈자리를 보충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 위원 정원이 15명으로 늘 것입니다. 시의회가 의원 5명을 직접 임명하고, 시장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경찰국장이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 8명을 임명할 것입니다. 추가로 생기는 위원 2석 중 1석은 공익옹호관이 임명하고, CCRB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는 나머지 1석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시장이 현직 위원 중 1명을 임시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석을 60일 이내에 채워야 한다는 조항도 생길 것입니다.

민원심사위원회 예산 안정화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현재 경찰민원심사위원회의 예산은 시장과 시의회에 의해 책정 및 승인되며, 매년 조정됩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 예산이 매년 지나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CRB의 인사 예산을 뉴욕시 정복경찰관 인원의 0.65% 이상의 직원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전반적인 시 예산 축소의 일환으로 CCRB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할 시에만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징계 권고사항의 불이행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조사 후 특정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는 경찰국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특별 지도, 정식 교육 과정 수료, 휴가 제한, 등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또한 뉴욕시 경찰국 간부가 감독하는 징계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정직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경찰국장은 CCRB의 권고 사항과 경찰국 징계 재판의 판결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CCRB가 징계를 권고하는 경우, 경찰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통보해야 하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경찰국장은 어떤 징계 조치를 취했는지를 포함하여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CCRB의 권고 사항이나 뉴욕시 경찰국 징계 재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국장은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CRB 권고보다 징계 수준을 감경하면 45일 이내에 그 사유, 결정 절차 및 다른 고려 사항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하세요

2번 주민투표안 요약문 및 부가 설명 (앞에서 이어짐)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있더라도 현재로서 CCRB는 위증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행하거나 징계 조치를 권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뉴욕시 경찰국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 조사 중 조사 대상인 경찰관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의심되면 CCRB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또 위증 사실이 입증되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소환권 위축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경찰민원심사위원회(CCRB)는 경찰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사진 및 동영상과 같은 증인 및 정황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CCRB는 증거물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지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경찰민원심사위원회는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실행이사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지체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서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주민투표안: 공직자윤리법

투표용지에 기재될 주민투표안 공식 내용

질문 #3: 윤리와 관리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의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고위공무원이 퇴사한 후 2년간(현재는 1년) 근무했던 기관(또는 정부 지부)에 나타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시 직원을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시장이 선정하는 이해충돌위원회(Conflicts of Interest Board, COIB) 위원 두 명을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1명과 공익 옹호관이 임명하는 1명으로 대체합니다.

COIB 위원들이 지역 선출직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선거 주기별 위원의 최대 기부금 한도를 후보자들이 시에서 활동 중인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줄입니다(400달러 이하, 공직에 따라 다름).

소수인종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 프로그램의 시 전역 책임자는 시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며, M/WBE의 시장 사무소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시의 공사 고문(Corporation Counsel)은 시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게 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3번 주민투표안 요약문 및 부가 설명

선출직 공무원 및 임명직 고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퇴직한 다음 유관 사기업에서 재취업을 하는 뉴욕시 공무원(선출직 포함)은 새 직장을 대표해 과거 자신이 속했던 시 기관이나 정부 부서와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금지 조항은 시 정부에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합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에 한해 이 전관예우 방지법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것입니다. 시장 대행, 시 기관 책임자, 모든 시 위원회 유급직 위원, 시 위원회 책임자 또는 최고위급 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 2년 금지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기 때문에 이 전에 임기가 끝나는 현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충돌위원회 구조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뉴욕시 이해충돌위원회(Conflicts of Interest Board, COIB)는 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공무원 윤리법은 겸직, 봉사활동, 선물, 정치 활동, 직권 남용 및 퇴직 후 취업 제한과 같은 규정을 포함합니다. COIB 위원은 총 5명으로, 모두 시장이 임명하고 시의회가 승인합니다. 현재 COIB는 5명 위원 중 2명의 동의만 있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시장은 이해충돌위원회(COIB) 위원 5명 중 3명에 대한 임명권만 갖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2명은 공익옹호관과 감사원장이 각기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의회가 모든 임명을 승인해야 하며, COIB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위원 5명 중 2명이 아니라 3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해충돌위원회 위원 정치활동 규제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이해충돌위원회 위원은 공직에 출마하거나 맡을 수 없고,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정당 직책을 맡을 수도, 시 정부에서 로비스트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기부하거나 선거 캠페인에서 근무 및 자원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이해충돌위원회 위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해 뉴욕시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및 시의원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서 직책을 맡거나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것을 금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에 기부하기 원하는 경우, 정부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부자와 동일한 제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시장 후보에게는 \$400, 공익옹호관 및 감사원장 후보에게는 \$320, 시의원 후보에게는 \$250 한도 내에서만 기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번 주민투표안 요약문 및 부가 설명 (앞에서 이어짐)

뉴욕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뉴욕시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프로그램은 소수민족 출신 사업가나 여성이 소유한 기업에 시 정부 사업 입찰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뉴욕시 M/WBE 프로그램 책임자는 시장이나 시장 산하 위원장에게 업무 보고를 합니다. 최근 몇 년 간은 시장 사무실이 직접 M/WBE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행은 차기 시장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시장 산하 M/WBE 업무부를 창설하고 M/WBE 프로그램 책임자가 시장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하도록 시 헌장이 개정될 것입니다.

뉴욕시 법무국장 임명 절차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뉴욕시 법무국은 900명이 넘는 변호사로 이뤄져 있으며, 시 정부, 법, 공무원 및 기관을 지원하고 변호합니다. 시 고문(Corporation Counsel)이란 정식 명칭을 가진 법무국장의 임명 및 해임권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장이나 시의회 같은 시 기관과 법무국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시 법무국은 어떻게 시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법무국장에 대한 임명권을 시장이 유지하도록 하되, 시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국장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시장은 후보 임명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시의회가 임명 동의를 거부하면 또 60일 이내에 다른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번 주민투표안: 시 예산

투표용지에 기재될 주민투표안 공식 내용

질문 #4: 시 예산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현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는 예기치 않은 재정난 해소와 같은 향후 용도에 대비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수익안정기금, 즉 경기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불황대비기금 사용을 위해 주법 변경도 필요하게 됩니다.

공익 옹호관과 자치구 장을 위한 최소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시장이 재정적으로 예산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무소의 예산은 물가상승률 또는 시의 총지출예산(특정 요인 제외)의 변동률 중에서 작은 쪽에 맞춰 연간 조정된 2020년 회계연도 예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4월 26일(6월 5일이 아님)까지 비재산 세수 추정치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도 업데이트된 예상치를 제출할 수 있지만, 5월 25일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업데이트된 예상치가 재정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장이 시의 재정 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예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된 예산 수정안은 30일 내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4번 주민투표안 요약문 및 부가 설명

수익안정기금(“경기불황대비기금”으로도 칭함)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뉴욕시는 미래 있을 수 있는 경제 침체 및 위기에 대비해 매년 예산의 일부를 경기불황대비기금에 배정합니다. 현재 뉴욕시 정부는 시 및 주 법에 따라 매년 균형예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세입이 줄더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기불황대비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 정부가 일부 예비금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때에 따라 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시 퇴직 공무원 의료보험 기금인 Retiree Health Benefits Trust의 예치금을 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주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뉴욕시 정부가 경기불황대비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시 헌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 정부가 경기불황대비기금을 인출할 수 있으려면 주 의회 또한 뉴욕주 비상 재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익옹호관 및 보로장 예산 안정화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공익옹호관 및 보로장 지정 예산은 매년 시장과 시의회의 예산 협상 과정을 통해 설정되며, 그해 상황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공익옹호관 및 보로장 지정 예산을 최소한 시 경비예산 증가율이나 물가 상승률 중 낮은 쪽에 맞춰 매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최저 수준 아래로 지정 예산을 삭감하려면 시장이 전반적인 시 예산 축소의 일환으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 수익 추산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시의회는 매해 회계연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균형예산의 원칙에 따라 그해의 예산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시장은 늦어도 6월 5일까지 재산세를 제외한 모든 수익(소득세, 판매세, 주 및 연방 지원금, 등)에 대한 추산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안이 의결되면 시의회는 이 추산을 토대로 재산세율을 정해 예산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예산안 의결 기한에 가까운 시기에 추산을 제출하기 때문에 시의회는 시 정부의 예산 폭이 재산세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시의회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균형예산을 이루도록 시장은 행정부 예산안 제출 기한인 4월 26일까지 비재산세 추산액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은 5월 25일(균형예산안 의결 기한 11일 전)까지 추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5월 25일 이후에 추산을 수정하려면 시장은 어떤 재정상 이유로 수정이 필요한지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번 주민투표안 요약문 및 부가 설명 (앞에서 이어짐)

예산 수정 기한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뉴욕시 시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임무와 더불어 지출과 수입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시장은 매년 최소한 4번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시 수입이나 지출이 증가 또는 감소했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원하면 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장은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거나 시의회가 수정안을 반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 헌장이 수정 통보 기한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자신이 원하는 변경 사항을 시행한 이후에 이를 시의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시장이 결산 보고서 발행 30일 이내에 모든 예산 변경에 대해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5번 주민투표안: 토지이용규제

투표용지에 기재될 주민투표안 공식 내용

질문 #5: 토지 이용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표준토지이용검토절차(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 ULURP) 대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서가 공청회를 위한 인증을 받기 최소 30일 전에 도시계획부(Department of City Planning, DCP)는 해당 자치구 장, 자치구 위원회(Borough Board), 지역사회 위원회(Community Board)에 프로젝트 요약본을 송부하고 웹사이트에 이를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DCP로부터 공청회를 위한 인증을 받은 ULURP 신청서를 검토하도록 지역사회 위원회에 추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6월에 인증된 신청서의 경우 90일이(현재는 60일), 7월 1일 ~ 7월 15일에 인증된 신청서의 경우 75일이 적용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5번 주민투표안 요약문 및 부가 설명

토지이용검토절차 - 인증 전 통보 요구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뉴욕시 블록 하나하나마다 어떤 종류, 높이 및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업자나 개발업자가 이런 규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기 원하면 "토지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 당국은 해당 절차에 따라 이를 검토합니다. 개발업자가 특정 지역을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변환하기 원하거나, 건축업자가 지역 조례가 허락하지 않는 양식의 건물을 짓기 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 정부가 대지나 건물을 매매 및 임대하려 할 때도 토지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는 토지이용검토절차(ULURP)를 통해 평가됩니다. 이 절차는 커뮤니티보드, 보로장, 뉴욕시 도시계획 위원회 그리고 주민에게 토지이용신청서를 검토하고 평가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공 승인 절차는 뉴욕시 도시계획국이 자체적인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신청서가 모든 조건을 만족했음을 인증한 다음에야 시작됩니다. 도시계획국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개발업자는 자신이 제출한 계획이 영향을 미칠 지역의 주민, 커뮤니티보드 및 보로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도시계획국은 모든 토지이용신청서에 대한 상세한 요약문(위치 및 요청한 변경 사항의 목적 포함)을 신청서를 인증하기 최소한 30일 전까지 해당 지역의 보로장, 보로 위원회 및 커뮤니티보드에 보내고, 그런 다음 5일 이내에 도시계획국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차후 도시계획국이 인증하는 토지이용신청서는 요약문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커뮤니티보드 검토 기간 연장

선거재정위원회 요약문

커뮤니티보드는 도시계획국이 인증한 토지이용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지역사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공청회를 연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권고사항을 의결해 보로장과 도시계획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뉴욕시 커뮤니티보드는 소속 위원들의 휴가 일정 때문에 7월과 8월에 정기 회의를 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두 달 사이에는 토지이용신청서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커뮤니티보드는 6월에 받는 도시계획국 인증 토지이용신청서에 한해 90일의 검토 기간을 갖게 되며, 7월 1일과 15일 사이에 받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75일의 검토 기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질문과 응답

내가 등록 유권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웹사이트 voting.nyc에 방문해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866-VOTE-NYC**(로-868-3692; 청각 장애인을 위한 번호는 212-487-5496)로 연락해 문의하세요.

내 유권자 등록이 만료되었을 수 있나요?

유권자 등록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연방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거나 이사한 다음 선관위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올바른 투표소에 가더라도 유권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선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를 사용해 투표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투표해야 하나요?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하거나 **866-VOTE-NYC (866-868-3692)**로 전화하면 귀하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하러 가기 전 투표소 위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 하십시오.

투표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 서류에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해당 투표소에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것이라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투표한 다음 뉴욕시 내에서 이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관위는 뉴욕주 내에서 이사한 유권자의 등록 정보를 일년에 한 번 갱신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사했다면 voting.nyc를 방문해 귀하의 정보가 갱신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갱신되지 않았다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Voting information that has changed(변경된 투표 정보)" 칸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써넣으십시오. 전 주소와 새로운 주소를 기재하고 당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정당에 체크 표시한 다음 (과거에 유권자 등록을 했을 때 이미 당원 등록을 마쳤더라도 다시 해야 합니다) 다른 사항도 빠짐없이 써넣어야 합니다. 이사한 다음 마감일에 맞춰 선관위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새 주소에 해당하는 투표소로 가서 선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866-VOTE-NYC(866-868-3692)**로 전화하면 주소변경 신청이 등록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 명부에 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해 귀하의 유권자 등록 여부와 투표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유권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더라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선거관리요원에게 선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를 요청한 다음 안내에 따라 투표하시면 됩니다.

선서투표용지가 무엇인가요?

선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는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자신이 투표할 자격이 있고 올바른 투표소에 방문했다고 여기는 유권자가 요청할 수 있는 종이 투표용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았거나 주소변경 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올라가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내에 따라 투표용지와 봉투에 표기하고 투표를 마친 다음 이를 선거관리요원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투표 자격이 있었는지, 올바른 투표소에 있었는지, 또 투표용지에 올바르게 기표하고 봉투를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한 다음 이를 유효표로 인정하게 됩니다. 투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공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선서투표용지 봉투가 향후 선거를 위한 등록 신청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요원이 내 투표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선거관리요원이 귀하의 투표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예를 들어, 귀하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해당 선거구 주민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선거관리요원에게 귀하의 투표권을 확인하는 선서를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증 시 처벌받는다라는 조건 아래 자신이 투표할 자격과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 (선서투표용지가 아니라) 일반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가을부터 뉴욕시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10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지 못한다면 부재자투표(absentee ballot)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뉴욕시에 있지 않은 경우; 일시적이거나 고질적인 질병 및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입원한 경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일차적으로 병간호해야 하는 경우; 재향군인병원, 유치장 또는 감옥에 감금된 경우; 대배심 판결을 앞두고 있거나 중범죄가 아닌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되어 형을 살고 있는 경우.

우편접수: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866-VOTE-NYC (866-868-3692)에 전화해 요청하거나 선관위 웹사이트(www.vote.nyc.ny.us)에서 직접 다운로드받으세요. 이를 작성해 귀하가 사는 보로의 선관위 사무실에 마감일 전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받으신 투표용지를 완성해 보로 선관위 사무소로 마감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가오는 선거일정”을 참조하세요.)

방문접수: 방문 부재자투표는 투표용지가 제공되는 날부터 선거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과 선거일 전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선거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귀하의 보로 선관위 사무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방문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우편 부재자 투표용지 요청 마감일이 지난 후 사고가 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겨 선거일 날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게 된다면, 서면 승인서를 소지한 대리인을 귀하가 사는 보로 선관위 사무소에 보내 본인을 대신하여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편을 통해 전해 받은 부재자투표 신청서와 투표용지는 빠짐없이 기재한 다음 선거일 오후 9시까지 보로 선관위 사무소로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일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나요?

올해 10월부터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일 전 두 번의 주말을 포함해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 9일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지정된 사전투표소로 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근무시간 때문에 선거일에 투표하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뉴욕주 법에 따라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할 계획이라면 2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무 시작이나 종료 시각에 맞춰 최고 3시간까지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반드시 사업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늦어도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해당 공고문을 게시해 두어야 합니다.

장애 때문에 투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투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나 노조 대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십시오. 투표소에 있는 선거관리요원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특수기표장치(BMD) 사용을 요청해도 됩니다.

특수기표장치를 사용하면 투표용지 내용을 화면상으로 보거나 오디오 헤드폰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에 갈 수 없을 시에는 부재자투표(absentee ballot)를 하시면 됩니다. 위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에 부재자투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투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 가서 도와줘도 되나요?

네.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고용주나 노조 대표는 제외)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나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유치장에 있어도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뉴욕주 법원, 다른 주 법원이나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하는 데 있어 판결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나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경우
- ◆ 구금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 선고받은 최대 형량을 채웠거나 만기 출소한 경우
- ◆ 가석방 상태에서 형을 마친 경우
- ◆ 사면을 받거나 (예: 뉴욕주 행정명령 181호) 가석방 기간 동안 불이익 구제 증서나 선행증(doccs.ny.gov/certrelief.html)을 받은 경우

다음 사안이 해당하면 유권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현재 수감 중인 경우
- ◆ 현재 가석방 상태인 경우. 하지만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 행정명령 181호(“가석방 뉴요커 투표권 회복”)를 통해 가석방된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면 교정국 웹사이트(doccs.ny.gov/ParoleeLookup/Lookup.aspx)를 방문하거나 가석방 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자신이 “투표 사면”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석방 기간 동안 불이익 구제 증서나 선행증을 받은 경우

나는 현재 노숙자인데 투표할 수 있나요?

예. 뉴욕시에서는 노숙자분들도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선거 관련 통지문을 보낼 수 있도록 우편 주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선거에 대한 대화를 나누세요

뉴욕시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주민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nycvotes를 팔로우해 뉴욕시 선거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아보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BOE) 연락처

유권자 등록, 등록 정보 갱신, 부재자 투표를 하고 싶으세요? 선거관리요원이나 통역사로 지원하고 싶으시다고요?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정규 근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선거일 전 주말: 연장 근무 (웹페이지 vote.nyc.ny.us에서 근무 시간을 확인하세요)

866-VOTE-NYC (866-868-3692; 청각 장애인의 경우, 212-487-5496)

본부 사무실

32-42 Broadway
7th Floor
New York, NY 10004
전화: (212) 487-5400
이메일: ElectionInfo@boe.nyc.ny.us

브롱스

1780 Grand Concourse
5th Floor
Bronx, NY 10457
전화: (718) 299-9017
팩스: (718) 299-2140

브루클린

345 Adams Street
4th Floor
Brooklyn, NY 11201
전화: (718) 797-8800
팩스: (718) 246-5958

맨해튼

200 Varick Street
10th Floor
New York, NY 10014
전화: (212) 886-2100
팩스: (646) 638-2047

퀸즈

118-35 Queens Boulevard
11th Floor
Forest Hills, NY 11375
전화: (718) 730-6730
팩스: (718) 459-3384

스태튼 아일랜드

1 Edgewater Plaza
4th Floor
Staten Island, NY 10305
전화: (718) 876-0079
팩스: (718) 876-0912

이 유권자 안내서에 대해서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유권자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및 시의원 선거나 뉴욕시 및 뉴욕주 주민투표안이 실시되는 선거 전에 선거재정위원회는 유권자 안내서를 제작하여 모든 뉴욕시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배송합니다. 시 전역 유권자에게 영어/스페인어판을 배송하며, 일부 지정 지역 유권자에게는 한국어, 중국어 및 벵골어판 안내서도 배송합니다. 또한 위 언어로 온라인판 안내서도 발행합니다.

이 안내서에 실린 모든 프로필과 사진은 후보들이 직접 선거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모든 후보는 프로필에 있는 정보가 그들이 아는 한 사실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후보 성명에 있는 견해는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것으로 예상된 모든 후보를 소개합니다. 온라인판 유권자 안내서(voting.nyc)를 참조하시면 최신 후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권자 안내서는 선거재정위원회 홍보부(Crystal Choy, Gina Chung, Winnie Ng, Jennifer Sepso, and Elizabeth A. Upp)가 법률부와 후보지원부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2019년 뉴욕시 본선거 유권자 안내서. © 2019: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
 판권소유. 편집 디자인: Two Twelve. 미국에서 제작.

32 | 웹사이트 voting.nyc를 방문하세요